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제3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한다.		제3조(소장) ① ----- 지방의무서기관 -- 지방보건서기관-----		

永登浦區民會館어린이집委託및  
構内食堂·構内賣店賃貸에 관한  
承認(案)

1993. 3. 17.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3月 3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3月 9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16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第1次 委員會(1993年 3月 16日) 上程決議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가. 提案理由

구민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구민회관 이용빈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바,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및 예식사용을 원하는 대다수 신청자와 많은 독서실 열람생동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개방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동시 설을 위탁 및 임대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主要内容

○ 위탁시설 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어린이집	구민회관 2층 소재	160㎡ (47.9평)	수용인원 37명

○ 임대시설 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구내식당	구민회관 1층 소재	193.06㎡ (58.4평)	수용인원 100석
구내매점	구민회관 1층 소재	10.58㎡ ( 3.2평)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金熙中)

幼兒保育施設運營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行政財産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업무이나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구민회관의 운영관리를 委託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사전 承認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구민회관 시설일부중 용도가 遊戯室로 준공된 어린이집 委託件을 同條例 改正 趣指를 勸案하여 불때 이를 適用하여도 無理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保育施設 從事者의 資格은 시설장 자격 및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하고, 또한 運營의 效率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從事者의 專門性이나 經驗等이 隨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與件을 갖춘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保育施設을 運營토록 하는것이 保育의 질을 向上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며,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장비구입 및 운영 보조비가 기 편성되어 있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運營은 委託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및 구내매점 責任件은 구민회관 시설 일부중 용도가 식당 및 매점으로 준공된 식당 및 매점 임대건은 구민회관의 公共性에 의한 便宜性을 提供하기 위하여 구내식당과 매점을

조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運營에 있어 直營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運營의 效率的 管理와 經濟的 側面에서 財政擴充에 기여할 수 있는 賃貸管理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 5. 討論要旨 : 생 략
- 6. 審査結果 : 원안 가결
-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永登浦區民會館어린이집委託및  
構內食堂·構內賣店賃貸에 관한  
承認(案)**

의안 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1993. 3.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동의이유

○구민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구민회관 이용빈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바,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및 예식사용을 원하는 대다수 신청자와 많은 독서실 열람생등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 개방을 요구하여 이에 따른 동 시설을 위탁 및 임대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시설 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어린이집	구민회관 2층 소재	160㎡ (47.9평)	수용인원 37명

○ 임대시설 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구내식당	구민회관 1층 소재	193.06㎡ (58.4평)	수용인원 100석
구내매점	구민회관 1층 소재	10.58㎡ ( 3.2평)	

3. 근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2호.

**永登浦區民會館어린이집委託및  
構內食堂·構內賣店賃貸에 관한  
承認(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동회관 일부시설인 어린이집(구민회관2층 소재, 160㎡〈47.9평〉)을 위탁하고, 동조 동항 제2호와 관련 동회관에 구내식당(구민회관1층 소재, 193.06㎡〈58.4〉)·구내매점(구민회관1층 소재, 10.58㎡〈3.2평〉)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